

구역조정의 방향 전환을 제안합니다

윤 주 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간사〉

올해는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지 32년이 되는 해이다.

한 제도가 도입되어 30년이 지나면 그 제도는 운영·관리면에서 성숙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는 국립공원의 지정기준·관리지침등의 결함과 재산권 침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그리고 최근의 그린벨트 조정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더욱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립공원구역 지정시 개발 및 이용지향적 정책하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역성 타당성 분석없이 설정되었던 점과 국립공원 면적의 42.9%가 사찰림을 포함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실효적 조치없이 주민들의 활동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함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겠다.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경계 설정이 잘못됨으로써 30여년 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는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기준(안)(이하 기준(안))에 대한 정

부의 태도가 국립공원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확실한 보존의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묻고 싶다.

'기준(안)'의 추진배경과 목적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경과는 상당부분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확대되어 추진됨으로서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현재 추진 중인 '기준(안)'은 1997년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정권교체 시기 국회 내 '국립공원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용역비를 예산에 배정하고, 당시 주무부서인 내무부 지역경제국에 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추진을 요구하면서 추진되었다.

당시 지역경제 관련 자문회의에서 이 사업이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되 명백히 공원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됨으로서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공원구역 경계부와 취락지구나 집단시설지구 경계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 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역조정 기준연구를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현 '기준(안)'은 불합리한 공원구역 경계부 조정을 위한 '기준(안)'이라기 보다는 공원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역 타당성 기준으로 확대되어 검토되고 있고, 용도지구 조정(안)도 불합리한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 경계부 조정을 위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국립공원 계획시 용도지구 설정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립공원(지)계획 사업과 혼선을 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기준(안)' 사업이 재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공원면적 총량제 전제하에 산악형 국립공원 1개소, 해상형 국립공원 1개소에 적용하여 ‘기준(안)’의 시행상의 합리성을 검증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준(안)’ 사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의 성토의 장으로 변한 토론회에 1~2명을 토론자로 지명한 것으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준(안)’ 현장 실사 작업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립공원구역조정문제는 경계선상의 사유지를 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공원 면적의 42.9%에 달하는 사유지가 한번 풀리게되면 계속 풀어줘야 하는 ‘도미노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경보존의 마지막 보루로서, 동·식물에게는 삶의 서식지로서, 우리에게는 유연한 삶을 제공하는 휴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일은 한 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일의 지표로서의 뜻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기준(안)’ 사업을 국립공원 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첫 단추가 생각하고 신중함을 유지하길 바란다. 또한 앞에 닥친 문제 해결이 아닌 국립공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